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5. 13 선고 2021가단5915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호

피 고 안성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

담당변호사 김춘희

변 론 종 결 2022. 4. 22.

판 결 선 고 2022. 5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-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답 967㎡와 C 답 125㎡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. 12. 8. 접수 제51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16. 12. 8. 피고에게 안성시 B 답 967㎡와 C 답 125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6. 12. 5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,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국토계획법 제99조 규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이행으로써 마쳐진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원고는,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와의 도로 연결을 묵시적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는데, 이후 2020. 12. 10.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의 토지가 진출입로, 국도 D과 연결되지 않게 됨으로써 묵시적 합의에 의한 증여 계약의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가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에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지현